

의안번호	2208939
의 퇴 인	이정헌의원
회 답 일	2025. 7. 10.
추계번호	25B1576
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간통신사업의 이용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25억원(연평균 5억원)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기간통신사업 이용현황 실태조사 (안 제32조의21 신설)	500	500	500	500	500	2,500	500

주: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한 유사사례 및 실태조사(안)을 바탕으로 재정소요를 추계한 것으로, 실제 조사내용 및 방식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2조의21 (기간통신사업 이용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등) 신설	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간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요금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·시행을 위하여 요금, 이용조건, 이용행태 등 기간통신사업의 이용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(제1항)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간통신사업의 이용현황에 관한 분석보고서를 발간할 수 있음(제4항)	재량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 여부	비고
1	안 제32조의21 (기간통신사업 이용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등) 신설	○	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추계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간통신사업의 이용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
 - 이용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용역 과업에 분석보고서 제작이 포함되며, 분석 보고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공개하는 것으로 가정함¹⁾
-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

1) 분석보고서를 책자 형태로 발간할 수 있으나, 해당 발간 비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본경비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본 추계에서는 제외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□ 기간통신사업의 이용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(안 제32조의21 신설)

-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간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요금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·시행을 위하여 요금, 이용조건, 이용행태 등 기간통신사업²⁾의 이용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, 실태조사 실시를 위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유사 실태조사 사례로,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행법 제34조의2³⁾에 따라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를 2021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고, 최근 3년간 매년 4~5억원⁴⁾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

[표 2]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내용

- (대상) 부가통신사업 신고 및 신고 간주 사업자 중 휴폐업 사업자 및 자본금 1억원 미만 사업자 등을 제외한 사업자를 모집단으로 선정하여 조사 실시
- (주요내용) 부가통신사업자 일반현황, 재무 및 인력 현황, 연구개발·보유기술 현황, 부가통신서비스 제공 현황 등을 조사

자료: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유사 실태조사 사례를 참고하여 작성·제출한 기간통신사업 이용현황에 관한 실태조사(안)에 따르면, 개정안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간통신사업 이용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25억원(연평균 5억원)으로 추계됨

2)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1. “기간통신업무”란 전화·인터넷접속 등과 같이 음성·데이터·영상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업무 및 음성·데이터·영상 등의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전기통신업무를 말한다. 다만,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통신서비스(제6호의 전기통신업무의 세부적인 개별 서비스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는 제외한다.

제5조(전기통신사업의 구분 등) ① 전기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한다.

② 기간통신사업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용하여 기간통신업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.

③ 부가통신사업은 부가통신업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.

3) 제34조의2(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가통신사업의 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부가통신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 대상, 조사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4) 인터넷 이용환경 고도화 사업(방송통신발전기금, 2032-302)의 내역사업으로 2023년 5억원, 2024년 4.5억원, 2025년 4억원 편성

[표 3]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간통신사업 이용현황에 관한 실태조사(안)

구분	내용
조사대상	- 현행법에 따라 등록된 기간통신사업자('24.12월 기준, 141개*) * 이동통신사업자 89개, 초고속인터넷사업자 41개, 유선전화사업자 11개 - 이용자 가구(2,000가구)
조사내용	① (사업자 조사) 이용약관, 가입조건, 복지할인, 납부액 분포 등 조사 ② (이용자 조사) 주요 통신서비스 가입, 결합, 요금 납부, 요금제 전환 등에 대한 오프라인 설문조사
연간 소요예산	약 5억원

자료: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[표 4] 기간통신사업 이용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기간통신사업 이용현황 실태조사	500	500	500	500	500	2,500	500

주: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한 유사사례 및 실태조사(안)을 바탕으로 재정소요를 추계한 것으로, 실제 조사내용 및 방식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한 유사사례 및 실태조사(안)을 바탕으로 재정소요를 추계한 것으로, 실제 조사내용 및 방식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최동완	김신애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최동완	02-6788-3746	dongwaniii@nabo.go.kr